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347

제출연월일 : 2005년 10월 1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산림의 공익기능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전제 조건임에도 국유림을 활용한 육림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분수국유림제도의 중단으로 더 이상 국유림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도유림과의 집단화 및 경제림조성이 적합한 사유림을 매입하고자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233회 도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 매입하려던 임야가 국유림관리소 등에 이미 매각되거나 소유자의 매각 거부로 매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상지를 변경 매입하려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재산의 취득

《 공유임야 확대 조성 》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분지리 산3번지 등 6개 지역
- 재산규모 : 2,540,325㎡(254ha)
- 사업기간 : 2005. 하반기
- 사 업 비 : 3,142백만원(도비)

※ 주요 변경사항 : 매입 대상지 및 면적, 사업비

■ 당 초

(단위:ha, 천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재산가액
	계	3지역		202	3,000,000
1	괴산 사리 방축	산28-12	임야	117	2,160,000
2	괴산 장연 오가	산44외1	임야	43	280,000
3	음성 음성 한별	산95	임야	42	560,000

■ 변 경

(단위:ha, 천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재산가액
	계	6개지역		254	3,142,000
1	괴산 연평 분지	산3	임야	33	366,000
2	제천 송학 시곡	산67-1등2	임야	48	551,000
3	괴산 청천 금평	산16-1등3	임야	138	1,825,000
4	괴산 청천 운교	산24	임야	10	63,000
5	괴산 청천 월문	산32-1	임야	9	123,000
6	청원 미원 화원	산79	임야	16	214,000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출자취득	출자처분	비 고
계	3,142,000	-	-	-	
○ 도유임야 확대조성	3,142,000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 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p>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8조(공유재산심의회)①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 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 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무상양수,환지무상귀속,교환,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처분(매각,양여,교환,무상귀속,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처분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 2 ~ 5호 생략